

# 골판지포장·물류산업정책

## Corrugated Packaging & Logistics Industry Policy

이 난은 골판지포장 산업과 물류 산업 관련 정부 정책과 산업계 정책 간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中小企業固有業種制度 方向改善告示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製造業은 98年 以後도 存置

解除業種 95. 1. 1 해제 45 업종  
97. 1. 1 해제 47 업종

解除留保業種 98년 이후도  
유보 88업종

정부는 그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에 대하여 논란이 거듭되어 온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94년 12월 14일 현재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되고 있는 180개 업종중 장기간의 보호로 이미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였거나, 사양화된 업종등을 95. 1. 1일부로 45개 업종을 해제하고, 97. 1. 1일 부로 47개를 해제하며, 아직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해제로 인하여 대기업 침투가 크게 우려되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등 88개 업종은 1998년 이후에도 고유업종으로 존속시켜 보호키로 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4,428호 <1994. 12. 14>)을 공포하였다.

한편, 동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새행령 제11조 제2항을 신설, 「② 외국인이 중소기업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의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자도입 법 제7조 또는 제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외

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의 대기업자와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외국인이 중소기업형태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참여 하는 경우는 별도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 신고없이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대기업 형태의 참여는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다.

동 개정령은 법 제6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한 것이 중요내용인바, 동 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의 지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고유업종 (동법시행령 제10조관련 별표)

<1994. 12. 14>

분야	업종	해제일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금속	○ 철제학생용 책걸상 제조업	1995.1.1	36101101
공업			36101102
분야	○ 맨홀 제조업	1995.1.1	27311100
	○ 울타리철선 제조업	1997.1.1	27123113
			28995103



분야	업종	해제일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철망 제조업	1997.1.1	27123114 28995101
	○ 땜납 제조업	1997.1.1	28999108
〈中略〉 ( [REDACTED] 는 지류포장제조업임)			
화학	○ 양초제조업	1995.1.1	36993105
제품			24299417
공업	○ 염화비닐열수축라벨제조업	1995.1.1	25241109
분야	○ 합성수지제 끈 제조업	1995.1.1	25299109
	○ 이륜차용 안전모 제조업	1995.1.1	25239103
	○ 종이컵 제조업	1997.1.1	21023101
			21099109
	○ 판자상자 제조업	1997.1.1	21024101
	○ 세탁비누 제조업	1997.1.1	24242102
	○ 폴리에칠렌 포대 제조업	1995.1.1	25242100
	○ 발포폴리스チレン(EPS) 내포장용 성형제품 (자체소비용을 제외한다) 제조업	1995.1.1	25222109
	○ 폴리에칠렌 및 폴리프로필 렌필름(이축연신플리프로 필렌필름 및 식품포장용랩 을 제외한다) 제조업	1995.1.1	25212101 25212102
	○ 골판지상자 제조업		21021 21024102 21024109
	○ 습강지(위생용 나프킨에 한한다) 제조업		21093101
	○ 광택제 제조업		21093102 24246102 24246109
	○ 골판지 제조업		21021100
	○ 재생타이어 제조업		25112100
	○ 고무장갑 제조업		25193102
	○ 플라스틱용기(폴리에스텔 용기 및 상자, 자가공정에		25293101 25293109

분야	업종	해제일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의하여 생산되는 150ml 이하의 드링크 요구르트 용기를 제외한다)제조업		
	○ 폴리스틸렌 페이퍼 시트 제조업	1997.1.1	25222109 2221 [REDACTED]
	○ 상업 인쇄업		25222102
	○ 콘크리트 치과기 제조업		24293101
	○ 발포폴리스틸렌(EPS)의 관 및 판 제조업		37202101
	○ 접착제(초산비닐 및 아크 릴수지 예열전에 한한다) 제조업	1997.1.1	
	○ 재생플라스틱원료 제조업		
요업제 품 및 건설자 재분야	○ 콘크리트 블럭·벽돌·기와 제조업	1995.1.1	26955101 26955102 26955105
	○ 유리용 도가니 제조업	1995.1.1	26922101
	○ 연마 지석 제조업		26992101

〈以下省略〉

### 1995年度 團體隨意契約 物品 골판지紙箱子 通產部 골판지紙包裝組合을 所管組合으로 公告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정부투자기관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이 포장재 골판지상자 등을 구매함에 있어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등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99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및 소관조합을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4-2호(1994. 12. 30)로 지정 공고하였다.

동 공고에 따르면 정부물품 분류번호 8115-0050, 표준산업분류번호 21021의 골판지 상자에 대한 1995년 단체수의

계약을 체결할 소관 조합으로 전국을 계약 대상지역으로 하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유현기)을 지정 공고한 것이다.

동 조합의 단체수의 계약 지정은 1985년부터 계속되어 왔다. 이로서 동 한국골판지포장조합은 조달청, 국립종자 공급소, 총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협동조합, 각급농협, 원예조합, 수협, 축협 및 각 정부투자기관 수요 골판지상자를 단체수의 계약으로 체결하게 된다.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0대 시책 정부 구조개선자금 1조 추가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 구조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을 1조원 추가, 오는 97년까지 지원키로 하고, 이와 함께 신용보증체계를 개선, 지역별로 신용보증 조합을 설립하고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재원의 확충과 직접금융기회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통상산업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신용보증을 위해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되, 우선 부산과 대구 등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2~3개를 세우고, 상황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하였으며, 기존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 신용 보증기금은 새로 설립되는 지역 신용 보증 조합에 재보증 하는 형태

로 운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을 확대추진, 품질혁신 운동, 중소기업 전용백화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증진 등의 시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원하기로 한 제2차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2조 5천억원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원자금을 1조원추가, 97년까지 시행키로 했다.

### 골판紙包裝 製造業 工場面積率 調整建議 既存工場 基準 현행 35%에서 20%가 妥當 부피產業特性 · 1日出入車輛 200台가 必要事由

정부에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조장하고,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정책과 관련하여 생산활동상 꼭 필요한 대지의 유통을 높이고자, 공업배치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공장입지 기준중 공장 면적율을 완화조정한 바 있으나, 21021 골판지 제조업에 대한 공장 면적율은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게 책정되고 있어, 골판지포장조합에서는 지난 95. 1. 26일자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의 기존 및 신규공장 면적률을 20%로 책정 조정하여 줄것을 건의하였다.

(표1)-1 현행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공장 기준면적율 (고시 1994-99호)

표준산업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 면적율	
		기준 공장	신규 공장
21021	골판지제조업	35(20)	35
21023	위생용 종이용기 제조업	25(15)	25
21024	골판지상자 제조업	30(25)	30
21093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5	25

단, ( )안의 기준은 기준공장의 용지면적이 3,000m<sup>2</sup>미만의 공장에 대한 적용률임

(表1)-2 ゴルフパネル包装・物流・産業政策

표준산업분류	업태구조내용	골판지상자 시장현황	
		업체수	시장점유비
21021 (골판지 제조업 : 일관제조 골판지상자 제조업포함)	골판지원자를 가공하여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직접 제조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포함) ○ 골판지제조 ○ 직접 제조한 골판지로 골판지 상자 제조	158 사	75 %
21024 (포장용 판지상자 및 관련품 제조업)	구입한 골판지 및 기타 판지로 상품 포장상자 또는 포장완충재 Pad, 칸막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포함) ○ 포장용 판지상자 제조 ○ 구입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 제조	350 사	25 %

\* 상기 표준산업 분류에 대한 통계청 공문사본 및 동건 분류정책 사례는 별첨참조.

### 3. 기준공장 면적율 조정 건의

#### 1) 조정건의(안)

구분	현행		조정(안)		비고
	기존공장	신규공장	기존공장	신규공장	
21021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	35(20)	35	20	20	

이 건의에서의 조정사유는 첫째, 21021의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은 부피산업으로 원자재 골판지 원지, 중간 제품 및 완제품의 입출고 차량이 1일 200대 전후로 트럭의 대기공간, 트럭의 회전공간 등이 넓어야 하며,

둘째, 부피가 작은 21023의 위생용기 제조업이나, 21093의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25%보다 높은 35%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시된 현행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에 관한 기준공장 면적율(공장 용지면적에 대한 공장전문 면적비)은 [표-1]과 같다.

#### 2) 조정사유

가) 21021의 골판지에서부터 골판지상자에 이르기까지 일관제조업인 골판지포장 제조업은 본래 부피산업이며, 다른 종 소량 다규격품 주문생산성과 포장사용자의 필요량만을 납품받고 잔량은 골판지포장공장에 보관하는 이른바 Just In Time 납기 신속, 단기화 추세 등 요인에 따라 원자재 골판지원지, 중간제품 및 완제품 입출고 차량이 방대하여 골판지포장 공장의 공장대지 역내 이용 상황으로 볼 때 나대면적이 많이 필요함.

나) 골판지포장 제품은 부피가 큰 산업이며, 생산량이 월 1000만m<sup>2</sup> 이상, 일간 40만 m<sup>2</sup> 이상 생산 출하되어 이에 필요한 차량대수가 차1대에 3.000m<sup>2</sup> 적재함으로 133대, 이에 상응한 원자재 원지 입고차량 60대, 기타 부자재 합 1일

입출차량 대수가 200대 이상 됨으로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일관 제조업 공장의 나대공간이 많이 필요함.

다) 부피가 작은 21023 위생용기 제조업 및 21093의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25%보다 21021을 높게 35%로 책정한 것은 모순이며, 21024의 포장용 상자 제조업의 1일 차량 출입대수 10여대 소기업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임.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의 산출방법 적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시 제3조 (기준공장면적율)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용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text{i) 기준공장면적율: } \left( \frac{\text{공장건축면적}}{\text{공장용지면적}} \times 100 \right)$$

#### ii) 기준공장면적율의 산정범위

가.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건축물(구축물 포함)의 각종의 바닥면적의 합계와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옥외사업장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신고일부터 4년 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용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용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② 기준초과용지 산출방법 및 예외인정범위

##### i) 산출방법

가. 1개의 단위공장이 1개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text{기준초과용지} = \text{공장용지면적} - \frac{\text{공장건축면적}}{\text{기준공장면적율}}$$

나. 1개의 단위 공장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초과용지 =

$$\text{공장용지면적} - \left( \frac{\text{A업종의 공장건축면적}}{\text{A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 + \frac{\text{B업종의 공장건축면적}}{\text{B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 + \dots \right)$$

다.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

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 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ii)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지인 경우에는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가. 기준 초과용지가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산출한 공장용지면적(공장입지 기준면적)의 10%미만이고,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용지

나.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다. 공장안에 활주로, 철로 또는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

라.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마.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구역안에 있는 용지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체육시설용지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산출한 공장용지면적의 10퍼센트미만에 해당하는 용지

사.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아.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용지로서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용지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 95年度 産業 災害 保険料率 告示

#### 【 鋼板紙包裝製造業은 1000분의 15로 引下調整 】

노동부에서는 95년도 산업재해 보험료율을 노동부고시 제94-52호(94. 12. 12)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이번 고시한 산재보험료율의 특징은 94. 9.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67개 업종별로 결정된 것으로 전산업 평균요율은 임금 총액에 대한 15.0/1000로서 94년도 19.4/1000에 비해 22.6% 인하 결정되었다.

업종별 보험요율 내용을 보면 94년도에 비해 보험요율이 인하된 업종은 석탄광업등 61개 업종이며, 별목업등

(표-2)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율

사업 종류	보험요율	사업 종류	보험요율
<b>1. 광업</b>		수송용기계 가구제조업(을)	15
석탄광업	272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금속 및 비금속광업	109	기구제조업	7
채석업	71	수제품제조업	8
석회석광업	50	기타제조업(주: 골판지포장제조업해당)	15
제염업	7		
기타광업	36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생산업	26		
<b>2. 제조업</b>		<b>3. 전기기계 및 상수도업</b>	
식료품제조업	11	4. 건설업	
담배제조업	6	일반건설공사(갑)	28
섬유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5	일반건설공사(을)	27
섬유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10	중건설공사	38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29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39
목재제품 제조업	25		
펄프 및 지류제조업	16	<b>5. 운수창고 및 통신업</b>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	4	철도궤도 및 삽도운수업	4
인쇄업	11	자동차여객운수업	10
경인쇄업	6	소형자동차운수업	12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5	화물자동차운수업	29
화학제품 제조업	13	수상운수업	17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제조업	5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4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12	항공운수업	6
고무제품제조업	10	운수관련서비스업	4
도자기제품제조업	11	창고업	12
유리제조업	9	통신업	5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18		
시멘트제조업	13	<b>6. 임업</b>	
시멘트원료채굴 및 제조업	21	별목업	35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	기타의 임업	9
금속제련업	7		
금속재료품 제조업	23	<b>7. 어업</b>	35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	26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82	<b>8. 농업</b>	8
도금업	17		
기계기구제조업	16	<b>9. 기타의 사업</b>	
전기기계기구제조업	8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9
전자제품제조업	4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1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20
수송용기계 가구제조업(갑)	8	건설기계관리사업	22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9
		기타의 각종사업	4

6개업종의 경우는 다소 인상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골판지포장제조업의 적용사업 종류는 [표 2 제조업] 중 맨 끝의 기타 제조업에 해당되며, 94년도 적용요율 19 / 1000에서 15 / 1000로 21% 하향조정되었다. 이는 한국골판지포장조합의 전의가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산재보험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다 나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제 까지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관광하여온 산재보험 징수 및 보상업무를 현재의 근로복지공사를 근로복지 공단으로 개편하여 1995. 5. 1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이관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5년도 산업재해 보상보험요율표는 [표-2]와 같다.

### 紙類製品 品質 保證 認證 機關 指定 工振廳에서 한국품질보증원을 公告

통상산업부 공업진흥청에서는 지난 12월 16일자 공업진흥청 공고 제 1994-1968호(94. 12. 16)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체제 인증기관으로 한국품질보증원(주)을 지정, 그 인증범위 개신 및 추가승인을 공고하였다.

이는 품질경영 추진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 및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 명칭 : 한국품질보증원(주)
2. 대표자 : 김원경
3. 주민등록번호 : \*\*\*\*\*-\*\*\*\*\*
4.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6동 528-13
5. 인증범위
  - 03 음식료품 및 담배
  - 07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 08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9 코크스, 석유제제품 및 핵 연료
  - 10 화합물 및 화학제품
  - 11 의약품

1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3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품

14 기계및 장비  
15 전기, 전자,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6 기타수송장비

6. 등록번호 : KAC 005

### 95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공고 통상산업부, 타자원지 등 66개 지정

통상산업부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및 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정부 투자기관, 공법인 등의 공공 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 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 지명경쟁에 의하여 구매 할수 있는 물품 66개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4-3호(1994. 12. 30)로 지정 공고하였다.

동 중소기업자간 경쟁 지정물품의 선정기준은 첫째,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다량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 둘째, 국내 총생산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물품으로서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구매할 경우 대기업의 참여로 중소기업의 안정 가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셋째, 중소기업형 제품으로서 품질이 보장 될수 있는 물품으로 되어 있다.

동 공고 내용에는 정부, 정부투자기관중 구매기관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방기관에서 소요로 하는 물품, 지방기관이 중앙기관에 구매를 의뢰한 물품, 중앙기관의 계획구매 물품중 지방구매분등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소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에 의하여 구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경쟁시대에 대비한 중소기업자의 자생력강화 일환책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쓰레기 從量制 全國 一齊 施

## 難分解包裝忌避 發生量 減少 · 再活用促進拍車

古紙 回收率 向上 등이 結果 有, 活用效果 好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그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온 생활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하여 95.1.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키로 하였다.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처음으로서 습관이 안되어 국민들이 다소 불편스러워 할 것이나, 이 제도가 정착되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에 걸쳐 강력히 실시하는 이유는 한국의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선진국을 상회하고 있어, 낭비적 요소가 크다는 점과 쓰레기 폐기상 문제점, 그리고 자원재활용촉진 측면에서 수립된 정책으로 알려졌다. 이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면 20 ~ 30%의 쓰레기감량이 기대되며, 재활용률은 배증(倍增)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3년도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1조 2000억원 임으로 예측대로 쓰레기가 감소된다면 대강 3000억원 이상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되며, 음식물 찌꺼기 800만t의 생산가 8조 원의 1/4만 줄여도 2조원의 자원절약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다.

동 쓰레기 종량제는 발생쓰레기 중 재활용되는 품목과 재활용 안되는 품목으로 분리하여, 재활용 안되는 쓰레기는 돈주고 산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어야 하며, 재활용되는 품목은 분류하여 일정수거일에 쓰레기 수거비용을 물지 않고 처리하게 된다.

환경부가 고시한 재활용되는 물품과 재활용 않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동 쓰레기 종량제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서는 분리수거 및 수집활동체계의 합리화가 요구되고 있다.

## ◇ 재활용되는 품목과 안되는 품목

종류	재활용 가능품목	재활용 안되는 품목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지, 책, 노트, 복사지 등</li> <li>-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li> <li>- 종이컵, 우유팩</li> <li>- 종이상자류(과자·과일상자 등)</li> </ul> <p>* 배출요령: 종이류에 붙은 스프링, 클립,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종이컵, 우유팩의 안을 깨끗이 씻어 일정한 부피로 묶어서 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코팅된 종이류(광고지, 포장지, 각종 홍보 유인물 등)</li> </ul>
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료수병, 주류병</li> <li>- 드링크병, 기타병</li> </ul> <p>* 배출요령: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 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백색(우유빛깔) 유리병</li> <li>- 거울, 각종도자기류, 내열식기류</li> <li>- 형광등, 전구 등</li> </ul>
캔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료용, 식품용캔</li> <li>- 분유, 통조림 등 캔</li> <li>- 에어졸, 부탄가스용캔</li> </ul> <p>* 배출요령: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며 에어졸, 부탄가스용캔은 구멍을 뚫어서 배출</p>	
고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li> <li>- 알루미늄, 스텐 구리, 알루미늄 새시 등</li> </ul> <p>* 배출요령: 고철에 붙어있는 고무나 플라스틱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찌그러뜨려서 묶어서 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인트통, 오일통 등 유해물 포장통</li> </ul>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제품류: 순모양복, 내의 등</li> </ul> <p>* 배출요령: 단추, 지퍼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에 젖지 않게 하여 묶어서 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일론 제품</li> <li>- 한복, 담요, 솜, 배개</li> <li>- 카페트,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 등</li> </ul>

종류	재활용 가능품목	재활용 안되는 품목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트병류</li> <li>· 음료수병(주스, 콜라, 생수병 등)</li> <li>· 간장병, 식용유병 등</li> <li>- 각종 식·음료용기류</li> <li>· 야쿠르트병, 사와병</li> <li>· 샴푸, 세제 용기류</li> <li>· 막걸리통, 물통, 우유병 등</li> <li>· 기타 용기류</li> <li>· 상자(맥주, 콜라, 사이다 등)</li> <li>· 쓰레기통, 쓰레받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li> <li>- 전화기, 소켓, 다리미·냄비의 손잡이, 전기전열기 등</li> <li>- 단추 화장품 용기, 식기류, 재떨이 쟁반 등</li> <li>- PVC류 용기 · 파이프, 빗물홀통, 장판 전선등</li> <li>- 복합재질 용기</li> </ul>

종류	재활용 가능품목	재활용 안되는 품목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바가지, 머리빗 등</li> <li>* 배출방법: 용기표면에 1, 2, 4, 5, 6번으로 재질 분류 표시된 플라스틱제품에 한해 내용물을 씻은 후 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자, 라면봉지 식품포장 용기 등</li> <li>- 기타 재활용 경제성이 없는 용기</li> <li>· 가전제품 케이스, 핵지박, 정화조</li> <li>· 비닐봉지, 스티로폼, 1회용품 등</li> <li>· 볼펜 등 필기구</li> <li>- 플라스틱과 철사가 합성돼 있는 제품(웃걸이 등)</li> </ul>

## 合成樹脂 包裝材 95. 2. 6부터 規制

### 합성수지제의 봉투·쇼핑백·코팅 광고지 전면 사용 금지

### 포도箱子·全家電製品의 合成樹脂 包裝 緩衝材도 바꿔야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개정

환경부는 지난 59. 2. 6일부 환경부령 제 3호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1회용품의 사용금지에 대한 세부실천사항」과 적용대상을 확정하고

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의 1회용의 합성수지컵, 금속박컵, 종이컵, 스티로폼 접시, 금속박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종이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의 95.2.6일부터 사용금지 및 합성수지로 코팅 또는 첨합(래미네이팅)한 광고선전물 전단의 제작·배포 억제

② 목욕탕 및 숙박업소에서의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무상제공 억제

③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m<sup>2</sup>이상인 영업장에서의 합성수지제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와 1회용 합성수지코팅 또는 첨합(래미네이팅) 광고선전물 전단의 95.2.6일부터 제작·배포 억제

④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증권거래업, 부동산 임대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사업 등의 합성

수지 코팅 또는 첨합(래미네이팅)광고선전물 전단 등의 95.2.6일부터 제작·배포 억제

⑤ 도시락제조업에서의 합성수지로 제조한 1회용 도시락용기의 95.8.1일부터 사용억제

####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환경부는 95.2.6일부터 환경부령 제4호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제품(상품)포장시 환경에 유해한 난분해성 합성수지 포장재 등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포장재 및 합성수지제 가전제품의 완충포장재 사용 규제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규칙에 의하면 제품(상품)의 포장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포장재에 대한 연차별 감량화 지침을 설정하여 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가전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 재질로 된 완충재를 감량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종전에는 3만m<sup>3</sup>미만의 가전제품에만 적용하였으나, 모든 가전제품으로 확대하고, 가전제품에 대하여 발포성 합성수지 재질 이외의 완충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